

	<b>토양개량제 지원사업</b>
--	-------------------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농기자재정책팀	팀 장 최호중	044-201-1891
		사무관 안치홍	044-201-1892
		주무관 박유천	044-201-1893
농협경제지주	자재부	팀 장 남 이	02-2080-6406
		차 장 류택건	02-2080-6410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 적

-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·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

### 2. 근거법령 : 농지법 제21조(토양의 개량·보전)

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18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, 밭 토양의 산도를 pH6.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

성과지표	201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 방식
		'15	'16	'17.P		
▪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(ppm)	157	157	157	157	매년 2월	전국 시·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(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)
▪ 밭토양의 토양 산도(pH)	6.5	6.5	6.5	6.5	매년 2월	전국 시·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(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)

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, 천톤)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(안)	2019년이후
합 계	91,717	91,366	88,597	75,471	75,471
국 고	64,202	63,956	57,560	50,830	50,830
지방비	27,515	27,410	27,756	21,784	21,784
물 량	675	645	600	522	522
제주도(국고)	(2,475)	(3,328)	(2,297)	(2,000)	(2,000)
제주도(지방비)	(1,061)	(1,426)	(984)	(857)	(857)
제주도(물량)	(25)	(31)	(22)	(19)	(19)

\*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'07~'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, '10년부터는 광역·지역 발전특별회계(제주특별자치도계정)에서 지원

## II.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### 3. 지원대상

- 규산 및 석회질비료
  - 규산 :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
  - 석회 : 산도(pH) 6.5미만의 산성 밭(과수원 등 포함)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
  - \*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(폐화석 포함)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·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
- 지역농협 또는 시비(施肥)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)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지원형태 : 지자체 경상보조
- 지원조건(안) : (규산) 국고보조 60%, 지방비 40%, (석회) 국고보조 80%, 지방비 20%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·동 단위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산정
-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리·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
-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·도(시·군·구청)에서는 농식품부에 조정요청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

### 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# 1. 사업신청단계

##### 농업 경영체

- 농업경영체(농업인과 농업법인)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.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·면·동에 제출하여야 함.
-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(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이 필요함
  -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 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
- 변경 및 추가 신청
  - 대상 사업연도 : 2018년
  -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: 사업 전년도 11월 7일~12월 6일(30일간)
    - \*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하여는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(변경)를 읍·면·동(시·군)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개방 기간에 입력토록 함
    - \* 읍·면·동(시·군)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운영기관에서는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

#### 2. 사업자 선정단계

##### 농협경제지주(지역조합)

- 농협경제지주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(전년도 11월)
  -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·도별 공급물량 확정
  - \* 석회 구매업체 조건 :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(입상)는 우수단체 표준제품(입상)을 우선 구매·공급
  - \* 패화석은 GR인증제품(입상)을 우선 구매·공급

## < 제 외 대 상 >

-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
-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
-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
-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
- 2017. 12월말 까지 [별표 1]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

### 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#### 농협(경제지주, 지역조합)

- 농협경제지주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
  -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(비종별),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
  -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(비종별)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
-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
  -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
- 지역농협장은 지역별(읍·면·동, 리별, 마을별 등)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
  - 공급단위 : 포대(20kg), 톤백(500~1,000kg)
  - \*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
-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,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,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**공급 확인서**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  - **지역농협은** 세부 착지별 300포(20kg기준)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,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(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)

- \*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. 단,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
-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,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**공급 확인서[별지제2호서식]**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고, **공급 후 농가 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[별지제2-1호서식]**를 6월말,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-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,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

### 농촌진흥청(농과원), 시·도(시·군·구)

-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·동 단위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(농과원)에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·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
-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·도(시·군·구청)에서는 농식품부에 조정요청(**'18년 사업 11월말**)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
- \* **2018년도**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·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(농과원)에서 **2017년 11월중순**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
- 지자체는 농협에 신청물량 전달시 지역별로 **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물량이 전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** 협조
-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법정리·동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,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 실시
  -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(읍·면·동)을 확정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- \*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예산확보, 대표필지 선정 및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
- \* Agrix 운영팀은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결과를 기본량이 적용된 지역과 검정하여 적정 소요량이 추천된 지역을 구분하여 보고

## 4. 자금배정 단계

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·군·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·면·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에 대금 지급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**공급확인서**, (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) 제출토록 함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
  - 시·군·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,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

### <토양개량제 살포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농업기술센터 포함) 및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를 위한 인력동원,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
-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, 농협·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,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.
  - 농협 **경제지주**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,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
  - 특히,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
  - \*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개별살포
  -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**경제지주**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

### 농협(경제지주, 지역조합)

-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[토양개량제 **공급확인서**(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)]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

## 5. 이행점검단계

### 《제재》

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토양개량제를 미살포(방치)하거나 조치사항 미이행 농업인은 다음 주기(3년 주기) 공급대상자에서 제외
  - 1차 확인(방치 우려) :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(살포예정일 확정)
    - \*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(6개월 이내)을 정하여 분실·훼손되지 않도록 보관·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(보관·포장 예정일 확정)
  - 2차 확인(조치사항 미이행) :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, 조치사항 미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미살포(방치) 물량에 대한 처리
  - 미살포(방치)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
- 미살포(방치) 확인,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(방치) 확인서 [별지 제3호 서식] 활용
- 미살포(방치)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 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
- 매년 토양개량제 미살포(방치)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·추진(연2회)
  -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(5월, 11월)
    - \* 상반기 살포 점검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실시

## 《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》

### 가. 품질검사

- 검사기관 : 농촌진흥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- 대상업체 :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
- 검사내용 :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
- 검사시기 : 업체별 연 1회(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) 이상. 단,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
- 시료채취 및 송부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(농진청고시)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·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(이하“시험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에 검사 의뢰
  -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
- 검사성적 통보
  -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
  -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**농협경제지주**에 즉시 통보
    - \* 농협경제지주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·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
-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
  - **농협경제지주**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·회수하고,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



## 나. 유통단속 검사

- 농촌진흥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
-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
- 농촌진흥청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,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

## 다.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

-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[별표1]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,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

## 《사후관리》

### 농림축산식품부

-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

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,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
  -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,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
- 읍·면·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,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

## 농협(경제지주, 지역조합)

-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, 살포지원

### 《추가신청 및 공급》

-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
  - \*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
-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서는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
  -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
- 농협(지역조합)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
  - 시·군·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

## 6. 성과측정단계

-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
  - (측정항목)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, 석회(패화석)의 경우 산성도
  -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효과 평균으로 설정
- 각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진청(기술보급과)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
- 농진청(토양비료과)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(익년 2월말까지)
-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
  - 농가,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

## 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### 《사업평가》

-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, 전년도 석회(패화석)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

### 《환 류》

-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점,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

## IV.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### 1. 2017~ 2019년(3년1주기)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사업신청 기간 : 2016. 1~4월 중(기 신청 완료)
- 지원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### 2. 2019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

-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: 2018. 10. 20.~11. 30일(40일간) \*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
- 지원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
-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
  -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·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진청(토양비료과)에서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법정리·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시스템에 지원
- 기타 사항은 201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

[별표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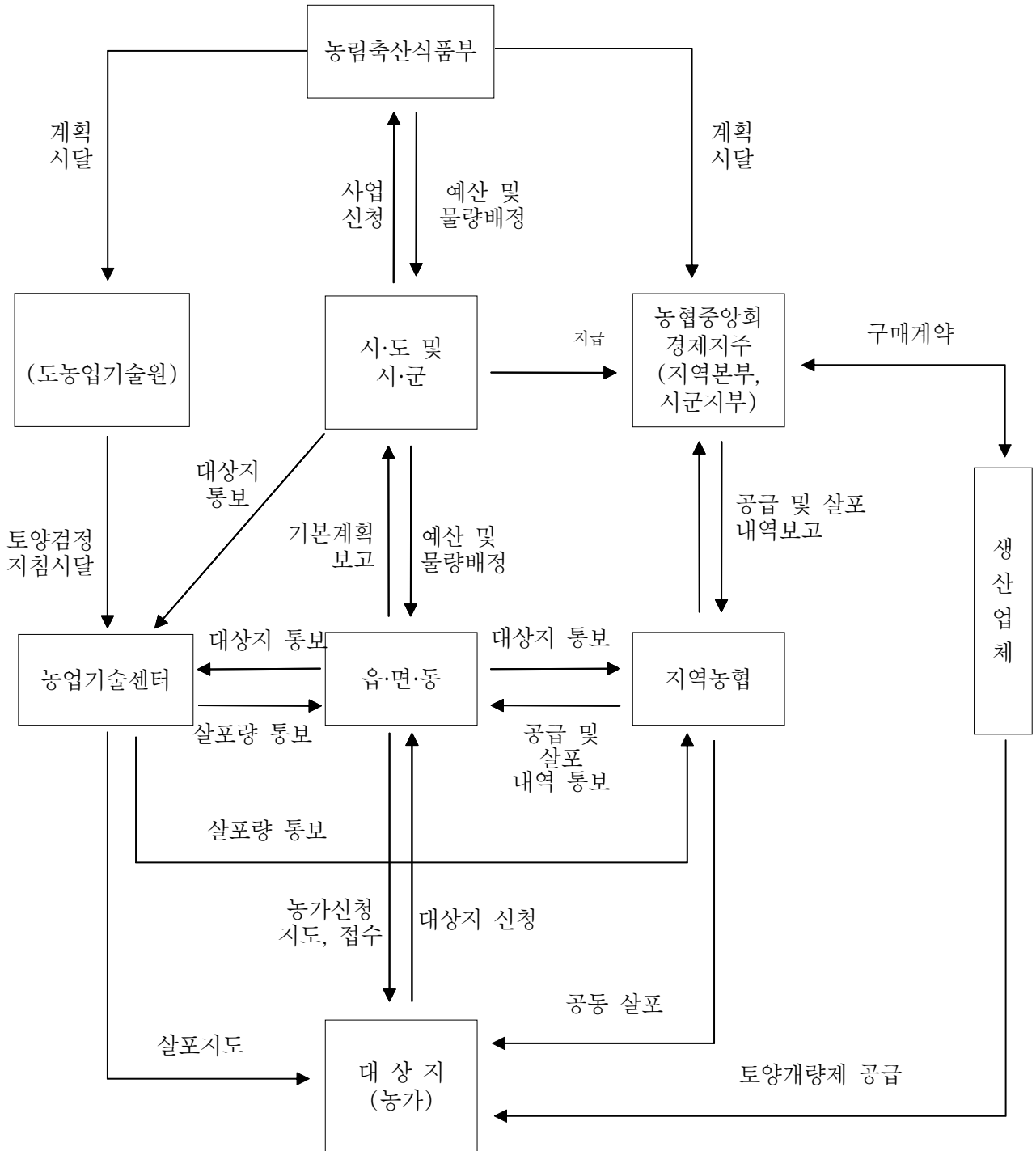
##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(토양개량제)

위 반 사 항	사업참여 제한기준	비 고
1.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	- 1회 : 1년 - 2회 : 2년	횟수는 위반후 1년 기준
2.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- 1% 이상 10% 미만 - 10% 이상 20% 미만 - 20% 이상	- 1년 - 2년 - 3년	
3-1.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(중량 포함) 기준미달 - 1% 이상 10% 미만 - 10% 이상 30% 미만 - 30% 이상	- 6개월 - 1년 - 2년	
3-2 그 밖의 규격(분말도, 봉피도, 염분, 입도, 수분 등) 기준 미달 - 1% 이상 10% 미만 - 10% 이상 30% 미만 - 30% 이상	- 6개월 - 1년 - 2년	
4.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	- 2년	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
5.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	- 2년	"
6.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	- 1년	"
7.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	- 1년	
8.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	- 1년	
9. 무포장(벌크 형태 등)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	- 2년	
10. 보증표시 위반 가. 보증표시를 하였으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) 생산년월일 2) 사용상·보관상 주의사항 3)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	-6개월	
나.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,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) 등록번호 2)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) 실중량 또는 실용량 4) 보증성분량 5) 원료명 및 배합비율 6)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	- 1년	

위 반 사 항	사업참여 제한기준	비 고
11.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-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	-1년	

- ※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(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)
- ※ 2개 비종 이상의 비료(토양개량제)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
- ※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(영업정지 1월 : 1년, 영업정지 2월 : 2년, 영업정지 3월 이상 : 3년)
- ※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
- ※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물량의 30%를 축소하여 계약할수 있음(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)

##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





**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**

**<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**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 -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 -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-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**< 고유식별번호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**

1.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 -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, 신청자의 본인확인,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,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
2.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
  -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(생년월일)
3.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-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**<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>**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  -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  -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 -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  -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(읍·면·동단위)

○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: ○○읍·면·동

<규산질 비료>

성명①	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	신청면적( m <sup>2</sup> )③	기준 소요량 (kg)④	신청량 (kg)⑤	확정량 (포)⑥	월별공급 희망시기( 월)⑦	농가 서명⑧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 포)
소계	○○리						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
소계	○○리	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	

<석회질 비료>

성명①	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	신청면적( m <sup>2</sup> )③	기준 소요량 (kg)④	신청량 (kg)⑤	확정량 (포)⑥	월별공급 희망시기( 월)⑦	농가 서명⑧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 포)
소계	○○리						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
소계	○○리	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	

### 【작성 요령】

① ~ ⑦번까지는 “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”에 따라 Agrix 시스템에서 읍·면·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.

\* 토양개량제 공급희망시기는 법정리·동 단위 확정(우기 7~8월 제외)

⑧ 농가서명 :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

\* 공급이후 지역조합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읍·면·동에 제출

[별지 제2-1호 서식]

## 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(읍·면·동단위)

○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: ○○읍·면·동

<규산질 비료>

성명①	주소②	신청면적 (㎡)③	공급물량 ④	공급시기(월) ⑤	미살포시 향후살포시 기(월)⑥	살포 확인⑦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서명 ( 포)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

<석회질 비료>

성명①	주소②	신청면적 (㎡)③	공급물량 ④	공급시기(월) ⑤	미살포시 향후살포시 기(월)⑥	살포 확인⑦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서명 ( 포)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

### 【작성 요령】

① ~ ④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확인

⑤ ~ ⑦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·면·동에 제출

- \*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·면·동에 제출(상반기 6월, 하반기 11월까지)
- \* 읍·면·동에서는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, 동 자료는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받아 1년간 보관

